

**비규제지역  
동해자이 청약특권**

**계약즉시  
전매가능**

**재당첨  
제한없음**

**유주택자  
청약가능**

**세대주/세대원  
모두 청약가능**

**거주기간  
제한없음**

### 공급개요

- 공급 위치 :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외 13필지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3층 ~ 지상 20층, 9개동, 총 670세대

### 분양가 및 분양조건

-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

※ 표기 : **당첨예정자** / 괄호 : (예비대상자)

주택형	국가유공자 등	장기복무 제대군인	10년 이상 복무군인	납북피해자	장애인	중소기업 근로자	計
84A	6 (5)	8 (7)	8 (7)	1 (1)	6 (5)	8 (7)	37 (32)
84B	4 (4)	4 (4)	5 (4)	1 (1)	4 (4)	5 (4)	23 (21)
計	10 (9)	12 (11)	13 (11)	2 (2)	10 (9)	13 (11)	60 (53)

☑ **당첨예정자** : 기관에서 "당첨자"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"당첨자"가 되는 자

☑ **예비대상자** : 기관에서 "예비자"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"당첨자"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

※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(예비대상자 포함)까지 가능하며,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※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,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.

###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일정

☑ **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**

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([www.applyhome.co.kr](http://www.applyhome.co.kr))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

구분	신청 접수일	비고
입주자 모집공고	2021.10.08 (금) 예정	• 동해자이 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xi.co.kr/dee">http://xi.co.kr/dee</a> ) • 분양문의 : 1544-4228 (10:00 ~ 17:00)
건본주택 개관	2021.10.08 (금) 예정	
특별공급 청약접수	2021.10.18 (월) 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/ 08:00~17:30) •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(10:00~14:00까지 / 만 65세 이상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)
당첨자 발표	2021.10.27 (수) 예정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

삶의 높이가 다른 *Prestige Life*

# 동해자이

## 1544-4228

총 670세대 ( 전용 84㎡ / 113㎡ / 115㎡ / 161㎡ )

###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

구분	비고						
1회 한정 / 자격요건 / 자격제한 /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</li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<b>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</b>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<b>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</b>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, 제27호의2,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의 경우는 제외) / <b>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.</b></li> <li><b>소형·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</b>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</li> <li>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<b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/b> (신혼부부/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)</li> <li>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(1회 특별공급 간주)로 판단됩니다.</li> <li>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					
무주택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<b>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</b>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li>※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중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 [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'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'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 선정 제한 및 계약체결 불가]</li> <li>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·비속까지 포함합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세대'란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'세대원'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택공급신청자</li> <li>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</li> <li>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부·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)</li> </ul> </li> <li>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)</li> </ul> </li> <li>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. (예) 전혼자녀 등</li> </ul> </li> <li>-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 주택 및 '분양권' 등 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</li> <li>나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</li> <li>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'분양권 등'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</li> </ul>						
입주자저축 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추천대상자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입주자저축 구비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요 없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남북피해자, 중소기업 근로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② 청약부금 :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li>③ 청약저축 :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/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(전환)한 자</li> <li>④ 주택청약종합저축 :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</li> </ul>	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	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	필요 없음	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남북피해자, 중소기업 근로자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						
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	필요 없음						
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남북피해자, 중소기업 근로자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						

###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

구분	신청 자격																		
자격요건 /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/li> <li>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②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저축 불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첨예정자: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</li> <li>- 예비대상자: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</li> </ul> </li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(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)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</li> <li>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'소형·저가주택'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</li> <li>•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해당기관</th> <th>연락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 유공자 등</td> <td rowspan="2">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</td> <td rowspan="2">033-610-0636</td> </tr> <tr> <td>장기복무 제대군인</td> </tr> <tr> <td>10년이상 복무군인</td> <td>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</td> <td>02-2225-6378</td> </tr> <tr> <td>납북피해자</td> <td>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</td> <td>02-2100-5897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</td> <td>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</td> <td>033-249-2416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근로자</td> <td>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</td> <td>033-655-414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국가유공자 등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, 5·18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</p>	구분	해당기관	연락처	국가 유공자 등	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	033-610-0636	장기복무 제대군인	10년이상 복무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02-2225-6378	납북피해자	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	02-2100-5897	장애인	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	033-249-2416	중소기업 근로자	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
구분	해당기관	연락처																	
국가 유공자 등	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	033-610-0636																	
장기복무 제대군인																			
10년이상 복무군인	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02-2225-6378																	
납북피해자	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	02-2100-5897																	
장애인	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	033-249-2416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근로자	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	033-655-4148																	
추천 기관부서																			

###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

#### ■ 당첨자 선정기준 [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]

-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, **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**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 **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**합니다.
-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/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, 동·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·호수를 결정합니다.
-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,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.
-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**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%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**합니다. (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)
-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,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-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·호수를 공개한 후 동·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. (동·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)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**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**,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
- 당첨자 중 **부적격 당첨자의 동·호와 미계약 동·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**됩니다.



###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

-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(분양사무소)가 가능합니다.
-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, 방문접수(분양사무소)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**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**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,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(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)하고,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.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.
-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,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,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.
-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)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,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,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8항에 따라 **부적격통보를 받고,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**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**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(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** 동안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예비입주자(특별공급)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(특별공급)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(동·호수 배정 및 계약)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.
-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동·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. [예비입주자의 동·호수 배정일(당첨일)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] 또한,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·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
###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확인서류 (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분양사무소 청약 접수 시 제출)

구분	해당서류	대상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(www.applyhome.co.kr)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-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의 경우 제외 ※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주민등록표등본		-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		-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 확인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신분증	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추가서류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대리인 접수 시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)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

- ※ **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**
- ※ 청약 자격조건인 기간, 나이, 세대구성원, 지역우선,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- ※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,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의 개정·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동해자이 투시도



※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, 조경 식재 및 시설물,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(개발계획, 주변건물 현황, 산, 조경, 외부식재 등)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 동해자이 위치도



※ 상기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CLUB XIAN

### 고급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입주민만의 특권!

피트니스, 사우나, 스크린골프, 카페테리아,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등을 포함한 입주인 전용 커뮤니티 시설입니다. 자이의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



※ 상기 시설은 인·허가 및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 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, 분양시 설계 및 구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UNIT PLAN

###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주거공간!

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과학적인 동선계획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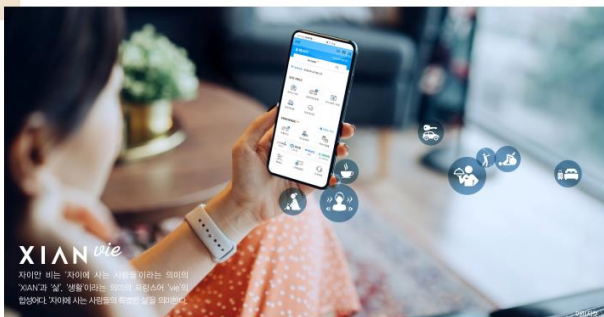
84㎡A



XIAN VIE

### 커뮤니티의 한계를 넘어선 주거문화의 혁신!

자이안비는 고객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, 경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단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생활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보입니다. 커뮤니티시설 이용 예약 및 각종 부가서비스 등을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건설업계 최초! 모바일통합 앱기반 커뮤니티 서비스

## XIAN vie

**CLUB vie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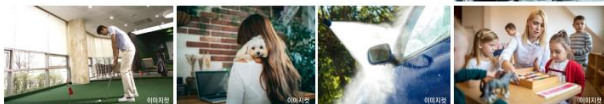
PT/안마, 골프타석 예약, 코치 관리 등 커뮤니티 공간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*CONCIERGE vie**

어린아이 돌봄, 세탁 및 청소대행, 세탁 서비스 등의 각종 생활면의 서비스 이용가능

**FLAGSHIP vie**

유명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



※ 상기 시설은 인·허가 및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, 서비스 관련 내용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/수정/중단될 수 있습니다  
 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인·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의 설계 및 구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MOTIVE - 동해의 풍경

### 동해안의 풍경을 담은 디자인

역동적인 동해안 파도의 물결을 모티브로 낭만적인 해안풍경을 담은 조경과 파도, 물길, 해안절리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.





홍보관 위치	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13-7
분양사무소 주소	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489-1
분양문의	<b>1544-4228</b>
사이버 견본주택 (공식 홈페이지)	<a href="http://xi.co.kr/dhh">http://xi.co.kr/dhh</a>

시행/신탁 하나자산신탁 위탁 에이펙스도시개발 시공 GS 건설

삶의 높이가 다른 *Prestige Life*

# 동해자이

## 1544-4228

총 670세대 ( 전용 84㎡ / 113㎡ / 115㎡ / 161㎡ )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